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관급공사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08. 11. 10.

행정위원회

1. 審 査 經 過

가. 접수일자 : 2008년 10월 30일

나.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다. 회부일자 : 2008년 11월 5일 회부

라. 상정일자 : 제141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2008. 11. 6) 상정 의결

2. 提 案 說 明 의 要 旨 (제안설명자 : 감사담당관 김정진)

가. 제안이유

- 우리 구에서 발주하는 관급공사의 고질적인 불법하도급을 근절하여 부실공사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품질향상을 높이도록 불법하도급 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불법하도급 신고대상, 신고방법 및 접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
 - 구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대해 일괄하도급, 무면허업자에게 하도급, 재하도급 등 위반행위(안 제2조)
 - 신고자에게는 개인 또는 법인 누구나 가능하고,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고(안 제3조)

- 포상금 지급기준 및 지급제외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5조, 안 제6조)
- 접수내용 사실 확인 및 조치, 포상금 지급 및 심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7조, 안 제8조)
- 신고자가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10조)

3. 專門委員 檢討報告의 要旨 (專門委員 권오운)

- 본 조례안은 관급공사의 고질적인 불법하도급을 근절하고 부실공사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불법하도급 행위 신고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불법·부당 하도급 행위를 신고 함으로써 주민참여 기회를 제공하여 부실공사에 대한 감시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가 되나 불법하도급은 음성적으로 이루어져 신고자가 증빙자료를 확보하기가 어렵고 사법권이 없어 사실조사 등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 이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하고, 타구에서 이와 유사한 조례를 제정한 곳이 있는지, 있다면 운영실적이 있는지 등에 대하여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4. 修正案 要旨

가. 수정이유

- 본 조례안의 내용 중 중복된 부분은 일부 삭제하여 조문번호 등을 바꾸고, 조례의 형식적 체제에 맞추어 조문의 평이성과 간결성 및 정확성을 기하고자 함.

나. 수정골자

- 안 제1조 “건설산업기본법”을 “『건설산업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로 한다.
- 안 제2조 제1항 중 “제1항” 표기를 삭제하고, “건설산업기본법”을 “법”으로 한다.
- 안 제3조 제1항 중 “공사발주부서 등”을 “감사담당부서”로 한다.

- 안 제6조 제1호 및 제2호를 삭제하고, "제3호"를 "제1호"로, "제4호"를 "제2호"로, "제5호"를 "제3호"로, "제6호"를 "제4호"로 하여 안 제7조로 한다.
- 안 제7조 제4항 중 "감사담당관"을 "공사발주부서 등 관련부서"로 하여 안 제6조로 한다.
- 안 제8조 제1항 중 "제1항" 표시를 삭제한다.
- 별표 "포상금지급기준"을 "포상금지급기준 (제5조 관련)"로 한다.

5. 審査結課：修正案可決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관급공사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 | |
|----------|--------------|
| 의안 번호 | 관 련 174 호 |
|----------|--------------|

제안연월일 : 2008. 11. 6

제안자 : 윤 동규 위원 외 1인

1. 수정이유

- 본 조례안의 내용 중 중복된 부분은 일부 삭제하여 조문번호 등을 바꾸고, 조례의 형식적 체계에 맞추어 조문의 평이성과 간결성 및 정확성을 기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안 제1조 “건설산업기본법”을 “『건설산업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로 한다.
- 안 제2조 제1항 중 “제1항” 표기를 삭제하고, “건설산업기본법”을 “법”으로 한다.
- 안 제3조 제1항 중 “공사발주부서 등”을 “감사담당부서”로 한다.
- 안 제6조 “제1호, 제2호를 삭제”하고 “제3호”를 “제1호”로, “제4호”를 “제2호”로, “제5호”를 “제3호”로, “제6호”를 “제4호”로 하여 “안 제7조”로 한다.
- 안 제7조 제4항 중 “감사담당관”을 “공사발주부서 등 관련부서”로 하여 “안 제6조”로 한다.
- 안 제8조 제1항 중 “제1항” 표기를 삭제한다.
- 별표 “포상금지급기준”을 “포상금지급기준(제5조 관련)”로 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관급공사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관급공사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안 제1조 “건설산업기본법”을 “『건설산업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로 한다.
- 안 제2조 제1항 중 “제1항” 표기를 삭제하고, “건설산업기본법”을 “법”으로 한다.
- 안 제3조 제1항 중 “공사발주부서 등”을 “감사담당부서”로 한다.
- 안 제6조 “제1호, 제2호를 삭제”하고 “제3호”를 “제1호”로, “제4호”를 “제2호”로, “제5호”를 “제3호”로, “제6호”를 “제4호”로 하여 “안 제7조”로 한다.
- 안 제7조 제4항 중 “감사담당관”을 “공사발주부서 등 관련부서”로 하여 “안 제6조”로 한다.
- 안 제8조 제1항 중 “제1항” 표기를 삭제한다.
- 별표 “포상금지급기준”을 “포상금지급기준(제5조 관련)”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수정안 대비표

| 개 정 안 | 수 정 안 |
|--------------------------------------------------------------------------------------------------------------------------------------------------------------------------------------------------------------------------------------------------|------------------------------------------------------------------------------------------------------------------------------------------------------------|
| 제1조(목적) <u>건설산업기본법</u> | 제1조(목적)『 <u>건설산업기본법</u> 』(이하 “ <u>법</u> ” 이라 한다)... |
| 제2조(신고대상) ①..... <u>건설산업기본법</u> | 제2조(신고대상) “ <u>법</u> ” |
| 제3조(신고방법 및 접수)..... <u>공사</u> <u>발주부서</u> | 제3조(신고방법 및 접수)..... <u>감사</u> <u>담당부서</u> |
| 제6조(포상금 지급제외)..... <u>1.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u> <u>거나 증거부족 등으로 사실여부가가 확인이</u> <u>안 되는 경우</u> <u>2. 외부기관, 언론 또는 구에서 이미 인지</u> <u>하여 조사개시, 조사 중이거나 완료된 경우</u> <u>3.(생략)</u> <u>4.(생략)</u> <u>5.(생략)</u> <u>6.(생략)</u> | 제7조(포상금 지급제외)..... <u>(삭 제)</u> <u>(삭 제)</u> <u>1.(현행 3호와 같음)</u> <u>2.(현행 4호와 같음)</u> <u>3.(현행 5호와 같음)</u> <u>4.(현행 6호와 같음)</u> |
| 제7조(사실 확인 및 조치)①-③ (생략) ④..... <u>감사담당관</u> | 제6조(사실 확인 및 조치)①-③ (생략) ④..... <u>공사발주부서 등 관련부서</u> |
| 제8조(포상금 지급 및 심의) ①..... | 제8조(포상금 지급 및 심의)..... |
| [별 표] <u>포상금 지급기준</u> | [별 표] <u>포상금 지급기준</u> <u>(제5조 관련)</u>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관급공사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 | |
|----------|---------|
| 의안 번호 | 제 174 호 |
|----------|---------|

제출연월일 : 2008. 10.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1. 제정이유

- 우리구에서 발주하는 관급공사의 고질적인 불법하도급을 근절하여 부실공사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품질향상을 높이도록, 불법하도급 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불법하도급 신고대상, 신고방법 및 접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

1) 신고대상 (안 제2조)

- 구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대해 일괄하도급, 무면허업자에게 하도급, 재하도급 등 위반행위

2) 신고방법·접수 (안 제3조)

- 신고자는 개인 또는 법인 누구나 가능하고,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고

나. 포상금 지급기준 및 지급제외에 관한 사항(제5조~제6조)

1) 위반행위별 지급기준은 행정기관의 처분결과에 따라 지급

- 지급 한도액 : 1인당 연간 5회 또는 최대 400만원까지 지급
- 위반행위별로 영업정지 기간·과징금 금액에 따라 신고포상금 지급금액을 정함(별표)
- 포상금 신고서식을 정함 (별지서식)

2)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거나 증거부족 등으로 사실여부가 확인이 안 되는 경우 등은 포상금 지급제외

다. 접수내용 사실 확인 및 조치, 포상금 지급 및 심의에 관한 사항(제7조~제8조)

라. 신고자가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환수에 관한 사항(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지방자치법제22조 (일부개정 2008.2.29 법률 제8852호)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나. 예산조치 : 2009년도 예산반영 예정

다. 합의사항 : 필요없음

라. 입법예고 [2008. 9.26~2008.10.15(20일간)] 결과 : 의견없음

붙임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관급공사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가 발주하는 사업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하여 불법하도급한 자를 신고한 사람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으로, 건설현장의 고질적인 불법하도급을 근절하여 부실공사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품질향상을 높이도록 건전한 신고문화 도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고대상) ① 구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로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에서 정한 하도급제한을 위반한 일괄하도급, 무면허업자에게 하도급, 재하도급 등에 관련된 사항으로 한다.

제3조(신고방법 및 접수) ① 신고자는 개인 및 단체 등 모두 가능하고, 공사 발주부서 등으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고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신고는 “별지서식”에 의한 서면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신고 접수 요건은 다음과 같다.

1. 신고자의 실명, 연락처 등 인적사항이 확인이 가능한 경우
2. 피신고인의 성명, 주소 및 불법하도급 거래행위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관련서류, 사진 등)가 첨부된 접수

③ 신고자의 신분이 불명확 또는 근거자료 부재 등 접수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는 접수가 불가하며 보완 완료 후 접수

제4조(포상금지급 요건 및 지급신청) ① 포상금 지급요건은 다음과 같다.

1. 불법하도급 행위 신고가 접수되고 조사결과 위법사실이 확인되어, 행정

기관이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확정된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위반내용 관련자 및 공무원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신고한 경우는 제외하며, 행정기관의 처분이 없는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을 제외한다.

② 포상금의 지급 신청은 불법하도급의 위법사실이 확인되어 행정기관 처분이 확정되었음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 또는 법률관계가 확정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5조(포상금 지급기준) ① 포상금 지급은 신고내용에 따라 시공사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을 경우는 영업정지기간 1개월마다 50만원 이내,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금액의 3% 이내로 지급하되, 세부지급 기준은 별표와 같이 한다.

② 제1항의 포상금 지급기준에도 불구하고 포상금 지급대상자 1인당 연간 5회 또는 4백만원을 초과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

③ 포상금은 지급 결정이 있는 해당연도 포상금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단,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는 다음 연도 예산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6조(포상금 지급제외) 포상금은 다음과 같은 경우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거나 증거부족 등으로 사실여부가 확인이 안 되는 경우
2. 외부기관, 언론 또는 구에서 이미 인지하여 조사개시, 조사 중이거나 완료된 경우
3. 신고자가 포상금 지급을 원하지 않는 경우
4. 포상 수혜를 목적으로 직, 간접적으로 사전공모 등 부정, 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5. 포상금 지급 신청기간을 초과하여 포상금 지급을 신청한 경우
6. 기타 심의결과 포상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사실 확인 및 조치) ① 신고내용의 조사는 공사감독부서에서 하되, 필요시 현장방문 확인, 조사를 실시한다.

- ② 사실로 확인된 신고내용에 대해 위법여부 판단은 관련법령에 의한다.
- ③ 신고한 사항이 아래와 같은 경우는 반려한다.
 1. 신고한 근거자료가 불충분하여 사실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2. 신고내용이 사실과 다른 허위인 경우
 3. 무분별한 음해성 투서 등으로 판단될 경우
 4. 구 또는 타 기관에서 이미 인지하여 조사 중이거나 조치 완료된 경우
- ④ 신고내용의 처리결과 및 포상금 신청안내를 신고자와 감사담당관에 통보한다.

제8조(포상금 지급 및 심의) ① 포상금 지급은 제5조제1항의 지급기준으로 감사담당관에서 지급하되, 지급 기준만으로 지급여부 또는 지급금액 등의 결정이 어려운 경우 포상금에 관한 사항은 “관급공사 품질향상위원회”에서 포상금 지급요건 및 지급금액의 적정성 여부를 심의할 수 있다.

제9조(신고자의 보호) ① 신고자가 요청할 경우 신고접수 및 조사시 인적사항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사실 확인 및 조사과정에서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암시하거나 공개를 금지한다.

③ 포상금 지급은 신고자의 신분노출 방지를 위해 신고자가 원하는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포상금의 환수) ① 신고자가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와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에 환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지급한 포상금 환수방법은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 표]

포상금 지급기준

(금액단위 : 만원)

| 불법하도급시 제재기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0조) | | | 포상금 지급금액 | |
|-----------------------------------------------------------------------------------------------------------------|------|--------------|--------------------|-----------------|
| 위 반 행 위 | 영업정지 | 과 징 금 | 영업정지 (50만원이내) 월 | 과 징 금 (3%이내) |
| ○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1인의 3자에게 하도급한 때 | 8월 | 1,500~24,000 | 50~400 | 45~400 |
| ○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2인이상에게 하도급한 때 ○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해당업종의 건설업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에게 하도급(재하도급을 포함한다) 한 때 | 6월 | 1,200~18,000 | 50~300 | 36~400 |
| ○ 일반공사에 해당하는 부분을 발주자의 승낙없이 해당업종의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한 때 ○ 재하도급 금지 규정에 위반 하였으나 해당업종의 건설업자에게 재하도급한 때 | 4월 | 800~12,000 | 50~200 | 24~360 |

